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12

발의연월일: 2024. 9. 11.

발 의 자:정성국・유용원・김대식

주진우 • 곽규택 • 조정훈

김용태 · 조경태 · 이헌승
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하고, 「국가 공무원법」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왔으나,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조회요청을 반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 회가 원활히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3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)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 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의 절차·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1조의3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)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 보자에 대하여 「국가공무원 법」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 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「형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 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 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의 절차・범위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